츠쿠바 생활의 팁!

Tsukuba!

No.3

2024년 12월

한국어

이번 호 주제 : 연말조정과 세금신고에 대해서

【年末調整と税の申告について】

일본에서 생활하고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금 관련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말조정(연말정산)과 세금신고 절차를 잊지 않고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이 없는 분들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한 절차가 필요한지 꼭 파악해 주세요.

※세금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호에 쓰여 있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궁금한 점은 세무서나 시의 시민세과에 문의해 주세요.

年末調整(ねんまつちょうせい)연말조정

연말조정은 회사가 직원의 1년간 소득세를 계산해 과부족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본에서는 급여 소득자의 대부분이 연말조정을 받으므로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단, 일부의 경우에는 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 신고에 대해서는 4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1. 대상자 :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
※급여 수입이 2,000만엔을 넘는 분, 개인사업주나 프리랜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시기: 11월경 회사에서 연말조정 서류 제출에 관한 연락이 옵니다..

주요신고서	공제 항목	신고서에 첨부가 필요한 서류	비고
부양 공제 등의 (이동)신고서 ※전원 제출	부양 공제, 장애인 공제, 과부(홀아비)공제, 한부모 공제, 근로 학생 공제	【국외 거주 친족과 관련된 공제를 제공받을 때】 ①친족 관계 서류 ②송금관계서류	･부양하는 친족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이 필요함. ･복수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직장에 제출해야 함
기본공제 신고서 및 배우자 공제 등의 신고서	기본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 공제		납세자의 합계소득이 1,000만엔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합계소득이 133만엔 이하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음
보험료 공제 신고서	생명보험료 공제, 지진보험료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 공제	보험회사 등에서 발행해주는 공제증명서･부금납부증명서 등	
주택 대출 등의 특별 공제 신고서	주택 대출 금액등에 대한 특별 공제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해주는 융자금 잔액증명서 등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받는 1년차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확정신고를 해야 함

【주의】
수입이란 일을 해서 얻은 돈이나 투자 등으로 얻은 돈 등 들어오는 모든 돈을 말합니다.
소득이란 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나 세금 등을 공제한 후 남는 돈을 말합니다.

번역 및 편집자 : 김 우정
발행 : 츠쿠바시 시청 국제도시추진과

플로차트: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제출 방법은?

시작

당신은 시민세·현민세(국민건강보험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간이적인 판정표이므로,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해 주세요.

올해 1월 1일 현재에 츠쿠바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 츠쿠바시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주민세 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

이전년의 1년간(1월1일~12월31일)에 어떠한 수입이 있었습니까?(A~E)

A

수입 없음

(유족연금, 장애인연금 또는 생활부조 등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수입 없음으로 취급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 혹은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
- 의료복지수급자 마루후쿠・장애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등을 신청하시는 분
- 돌봄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돌봄 보험 부담 한도액을 신청하시는 분
- 기타 신고가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
- 「소득이 0」인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
-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취득하고 싶으신 분

(증명서를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현재 츠쿠바시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만 해당 됩니다.)

→ ①로

→ ・츠쿠바시내에 주소를 둔 가족의 부양원이 되어 있는 분 → ②로

B

주로 공적연금 등의 수입

→
- 공적연금 등 수입금액이 400만엔을 초과하시는 분
- 공적연금 등 수입 이외의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시는 분
- 각종 공제(사회보험료, 생명보험료, 지진보험료, 미망인, 장애・부양・의료비 등)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를 환급받으시는 분
-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적연금 등(외국에서 지급되는 연금 등)의 지급을 받으시는 분

→ ③로

→
- 공적연금 등의 수입이 400만엔 이하이면서 그 이외의 소득이 20만엔 이하인 분
- 소득세 환급은 없으나 각종 공제 적용을 받으시는 분

※단,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적연금 등(외국에서 지급되는 연금 등)의 지급을 받는 분은 ③으로

→ ①로

→ ・공적연금 등의 수입만으로 일본연금기구에 제출한 「부양친족신고서」의 내용에 대해 변경이 없으신 분 → ②로

C

주로 급여 수입

- ・회사에서 연말조정을 하고 있으며, 회사를 통해 츠쿠바시에 급여 지불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분(직장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이직 후에 이전직장을 포함하여 연말조정이 되시는 분

→ ②로

- ・급여를 한 곳에서 받고 있으며, 회사에서 츠쿠바시에 급여 지불 보고서 제출이 없으신 분
-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이 20만엔 이하이신 분

→ ①로

- ・연말조정 내용에 변경이 있으신 분
- ・2곳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연말조정이 되지 않은 급여수입이 20만엔을 초과하시는 분
-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시는 분
-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의 적용을 받으시는 분

→ ③로

D

농업, 자영업, 부동산 등의 소득이 있음

- ・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 제외)보다 공제액이 적은 편이신 분
- ・원천징수세금이 있으신 분
- ・청색 신고로 손실 이월을 적용하고 싶으신 분

→ ③로

・소득금액보다 공제액이 많으신 분

→ ①로

E

장학금 이외의 수입이 없음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또는 시민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정 결과

①시민세・현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분은, 시의 홈페이지의「시민세・현민세 신고의 안내」의「소득이 없는 분의 기재 예시」를 참고하여 기입해 주세요.
・원천징수표나 지급조서를 발급받은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소득등이 있는 분은, 수입 및 경비를 정리한「수지 내역서」를 작성해 같이 제출해 주세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2차원 코드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세과 창구에 직접 제출을 하거나 시청에 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05-8555 츠쿠바시 연구학원 1-1-1
츠쿠바시청 재무부 시민세과 앞
〒305－8555　つくば市研究学園1－1－1
つくば市役所財務部市民税課宛

②신고는 불필요 합니다.
시민세・현민세에 관한 신고나 확정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③세무서에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문의 하실 점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 (츠쿠바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츠치우라 세무서에【 029(822)1100(일본어로만 대응 가능합니다)】)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確定申告(かくていしんこく)확정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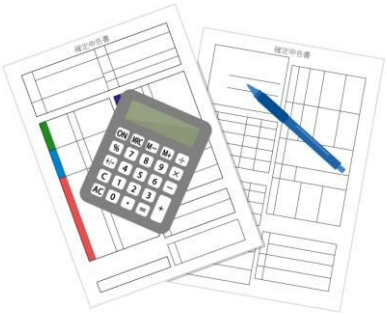

확정 신고란 1년간의 소득 (수입에서 필요경비 제외)을 세무서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혹은 2곳 이상으로부터 수입이 있는 사람은, 1년간의 수입과 경비, 그리고 지불한 세금등을 정리해 보고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의 과부족이 정산됩니다. 너무 많이 지불한 경우는 환급금이 돌아오며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불하기도 합니다.

1. 대상자 : 2, 3페이지의 플로차트에서 ③이 된 분

2. 시기 :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

※ 해당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로 대체됩니다.

개인사업주나 프리랜서의 경우
스스로 수입과 경비를 기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이나 지출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해, 그것을 기초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개인사업주나 프리랜서는 「청색 신고」와 「백색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는 장부 작성이 필요하지만 세무에 관한 제도 상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집니다. 백색신고는 작성이 간단하지만 우대조치는 적습니다.

일에 든 경비 (예를 들면, 업무용의 PC 구입비나 교통비등)를 수입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인의 대부분은 회사에서 연말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확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적습니다. 다만, 부업으로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나, 의료비 공제나 주택 융자 공제등을 받는 경우는 스스로 확정 신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외국인 대상 확정 신고서 작성 코너 입력 매뉴얼 (2023년판)

시민세・현민세 신고

시민세・현민세 신고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1년간의 소득을 보고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납부해야하는 시민세・현민세 (국민 건강 보험세)를 계산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1. 대상자 : 플로차트에서 ①이 되신 분
2.제출기한: 매년3월 15일
※ 해당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로 대체됩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주의】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는 당신의 소득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건강 보험세나 돌봄보험료, 아동 수당, 보육료등의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에서 과세・비과세 증명서나 소득 증명서와 같은 공적인 증명서 발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번역자의 한 마디 / 翻訳者から一言

안녕하세요. 츠쿠바시 학생 번역 스태프 한국어 담당 김우정입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나는 겨울이 성큼 찾아왔네요.
달력을 넘길 때마다 한 해의 끝이 다가오는 게 실감났었는데, 그것도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아쉬움이 큽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여러분이 쌓아온 소중한 추억과 새로이 맺어진 인연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다가오는 한 해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こんにちは。つくば市学生翻訳スタッフ韓国語担当の長野雨情です。
いつの間にか冷たい風が吹いて、白い息が出る冬がやってきました。カレンダーをめくる度に一年の終わりが近づいてくるのを実感しますが、それも今月が最後だと思うと不思議な気持ちになります。2024年ももう残りわずかになりました。
残った期間一年を振り返りながら大切な思い出や新しいご縁に感謝してみるのはいかかでしょうか。
近づく新年にも幸せと笑顔が溢れ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